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36

발의연월일: 2022. 5. 9.

발 의 자:김정재·김석기·김형동

김영식 · 김성원 · 서일준

이주환 • 정우택 • 한무경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업무 특성상 훈련생을 감독·평가하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가까운 거리에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호 신설 및 제35조). 법률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4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
	<u>0</u> 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
	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로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
	<u>라</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	자격취소 등) ①
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	
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4. (생 략)
- ②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u>제5호까지</u> <u>의</u>-----
- 3.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